

의안검토보고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 '9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3. 안건요지 :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1995. 2.

내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9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995. 2.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9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1995. 2. 9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 2. 10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 안 이 유

- 서구 둔산동 행정용지내에 신축 이전코자 하는 신청사는 당초 '94년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 '93. 11. 6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 '93. 12. 16 시의회 제28회 정기총회에서 '94년도 집행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결을 받은바 있으나
- 완벽한 시공을 위한 설계도서의 정밀한 검토 및 발주에 필요한 법적 소요일수의 부족등으로 당초예정 일정이 지연되어 착공 시기가 '95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 의회에서 의결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당해년도에 미집행된 사항은 익년도에 다시 의회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회의결을 받기 위하여 '95. 1. 21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임.

2. 주 요 골 자

- 공 사 명 : 대전광역시 신청사 신축공사
- 위 치 : 서구 둔산동 1420번지 (행정용지내)
- 규 모 : 연면적 86,214m (26,079평) - 지하 2층, 지상 21층
- 공사기간 : '95. 2 ~ '98. 11 (3년 10월)
- 공 사 비 : 960억원

3. 검 토 의 견

본 안건은 지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었던 사안으로 둔산 신청사 건립건에 대하여 계획 공기지연에 따른 예산 미집행과 규모변경에 따라 금번 다시 동의를 구하려는 내용임.

공사개요를 살펴보면 연면적은 총 26,079평으로써 지난해 11월에 완료된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1,263평이 늘어난 것이며, 공사기간도 금년 2월부터 98년 11월까지로 당초보다 1년이 연기되었음.

사업비는 일반재원 526억원과 특정재원 434억원등 모두 960억원으로써 금년도에는 공사비 및 감리비등으로 275억여원이 투자될 계획

이며, 이중 채무부담 50억원을 포함한 205억원은 금년 당초 예산에 이미 확보한 상태임.

앞으로 계획 공정대로 본 사업이 진행되고 사업비 역시 전액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볼때는 부족분 약 70억원에 대하여 금년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봄.

그러나 누차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이지만 계속되는 공기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난해에도 공사비 약20억원을 확보해 놓고도 착공을

못하여 금년도로 이월시키는 시행상의 난맥을 가져왔는데 금번 역시 이러한 문제들을 심도있게 연구·검토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그리고 재원확보 방안에서 있어서도 일반재원의 부족분은 시유재산 매각이나 경영수익을 통한 특정재원을 조달한다고 보는데 재원확보

방안 역시 장기적이고 막연한 대안보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계획한 연차별 재원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져야 하겠음.